

산학연공유·협업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18. 9. 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LINC3.0사업단 사회적경제협업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3.29.>
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기업연계 공용장비 구축 및 운영
2. 가족회사 관리 및 유료회원제 운영
3. 산업체(유관기관) 재직자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
4. 산학연협력 공유·협업 제도 및 시스템 구축
5. 산학연협력 대내·외적인 공유·협업 활동 지원
6. 글로벌 산학협력거점센터 구축지원 및 운영
7. 그 밖에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[본조개정 2022.3.29.]

제3조(위원회)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) 사회적경제협업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LINC3.0사업단 지원금, 본교 지원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22.3.29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3.2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